

제 874 호
1981.12.1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박영수
편집 : 공보관이용우
전화 725-7834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전화 725-6090

시보

차례

◎ 소	배	
제 1562 호 :	서울특별시종합기술시험연구소설치조례	3
◎ 규	칙	
제 1940 호 :	서울특별시종합기술시험연구소사무분장규칙	7
제 250 호 (시교육위원회) :	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소속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	8
제 251 호 (시교육위원회) :	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권한의위임에 관한규칙중개정규칙	10
제 252 호 (시교육위원회) :	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징계의 양정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	13
◎ 고	시	
제 61 호 (용산구청고시) :	'82 용산구시범가로및광고물계획정비 지구지정고시	19

<이면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서울특별시

㉠ 공 고

제 342 호 : 특정 열 사용기 자재 사용업 지정업체 지정 취소 공고.....	19
제 345 호 : 공인실조사용 승인공고	20
제 346 호 : 공인실조사용 승인공고	22
제 347 호 : 소방용기계기구제조업 소허가 취소공고.....	23
제 348 호 : 서소문구역 제 7 지구재개발사업 시행인기 불위한 공람 공고.....	24

㉡ 사 령

조 제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시험연구소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1년 12월 1일
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562 호

서울특별시종합기술시험연구소
설치조례

제 1 조 (설치목적) 이 조례는 보건 소연구법 제 1 조 및 제 2 조에 의한 보건연구소업무와 기타 각종 시험, 조사, 연구 및 검사업무의 집중관리로 시민생활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시험연구소(이하 "연구소"라 한다)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위치) 연구소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.

제 3 조 (소장) ① 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고 소장은 3급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.

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연구

소의 사무를 통할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 4 조 (공무원의 정원) 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총부 및 정원은 별표와 같다.

제 5 조 (하부조직) ① 소장 밑에 관리부, 위생화학부, 공해미생물부, 축산물검사부, 토목시험부와 연료시험과 및 계량기검사과를 둔다.

② 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위생화학부장 및 공해미생물부장은 4급 지방보건연구관으로, 축산물검사부장은 지방축산기정 또는 4급 지방수의관으로, 토목시험부장은 지방토목기정으로, 연료시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화공기사로, 계량기검사과장은 지방기계기사로 보한다.

제 6 조 (관리부) ① 관리부에 서무과와 경리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- ② 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- 1. 문서보안, 환인관수 및 청장단속
 - 2. 인사복무 및 직원후생
 - 3.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예산
 - 4. 청사관리

5. 기타 소내 다른부 및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③ 경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회계 및 물품관리
- 2. 금전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

3. 각종 수수료 수납

4. 각종 시험용 기자재수급 및 유지관리

5. 검체 및 시약관리

제 7 조 (위생화학부) ① 위생화학부에 약품화학과, 독극물과, 기기분석과, 식품분석과 및 식품위생과를 두고 과장은 5급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.

②약품화학과는 일반의약품의 시험분석 및 연구와 부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분장한다.

③독극물과는 마약, 독극물, 화장품, 방역약 및 위생재료등의 시험분석 및 연구를 관장한다.

④기기분석과는 기기장비의 관리와 특수약품, 식품등의 보존료, 잔류농약 및 공해검사등 특수성분의 분석 및 시험연구를 관장한다.

⑤식품분석과는 일반식품, 기호식품, 조미료등의 시험분석 및 연구를 관장한다.

⑥식품위생과는 식품첨가물, 어육면제품, 청량음료, 주류, 유가공품과 그 용기 및 완구류의 검사와 시험연구를 관장한다.

제 8 조 (공해미생물부) ①공해미생물부에 환경조사과, 대기보존과, 수질보전과, 세균과, 폐기물과 및 조사지도과를 두고 과장은 5급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. 다만, 대기

보존과장과 수질보존과장은 지방화공기과로 보할 수 있다.

②환경조사과는 대기, 수질의 자동측정소 운영과 대기반 자동측정소의 운영 및 진동에 관한 검사 및 조사연구와 부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관장한다.

③대기보존과는 공장, 사업장의 조업으로 인한 대기오염물, 위해가스소음의 검사등 대기오염원에 관한 시험연구를 관장한다.

④수질보전과는 공장, 사업장의 조업으로 인한 폐수 및 하천오염과 상수도, 정호수, 공업용수등 수질 전반에 대한 검사 및 시험·연구를 관장한다.

⑤세균과는 각종 식품의 세균학적 검사와 식중독검사 및 바이러스등 세균의 시험 연구를 관장한다.

⑥폐기물과는 폐기물의 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
⑦조사지도과는 각구 보건소 검사요원의 교육훈련, 보건자색출검사 및 각종 전염병균의 시험연구를 관장한다.

제 9 조 (축산물검사부) ①축산물검사부에 검사과, 시험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축산기과 또는 지방수의관으로 보한다.

②검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도축검사

- 2. 축산물검사
- 3. 부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③시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축산물 및 용기의 위생시험과 사료검사
- 2. 축산물작업장의 위생관리에 대한 조사연구
- 3. 가축전염병의 검진 및 병성감정과 방역
- 4. 가축전염병 및 인수 공통전염병에 대한 조사연구
- 5. 동물약품 및 첨가제의 검사

제 10 조 (토목시험부) ①토목시험부에 물리과, 토질과 및 화학과를 두고 물리과장, 토질과장은 지방토목기과로, 화학과장은 지방화공기과로 보한다.

②물리과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과 과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분장한다.

③토질과는 건설공사의 토질시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
④화학과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유기, 무기화학 시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
제 11 조 (연료시험과) ①연료시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연료용구의 시험에 관한 사항

- 2. 연료의 열량측정 및 화학분석에 관한 사항
- 3. 색연료원의 개척에 관한 사항
- 4. 고압가스용기 및 연소기구의 안전도 검사

제 12 조 (제량기검사과) 제량기검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제량기의 제작시험에 관한 사항
- 2. 제량기의 검정검사에 관한 사항
- 3. 제량기의 제작업허가에 관한 사항
- 4. 제량기 생산실적 증명
- 5. 제량기제작업 공장이전 허가
- 6. 제량기제작업 폐업신고

제 13 조 (직무대행) 소장기 사고가 있을 때에는 관리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소장과 관리부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순위에 의지 해당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14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폐지한다.

- 1. 서울특별시 보전연구소설치조례
- 2. 서울특별시 축산물위생검사소 설치조례
- 3. 서울특별시 토목시험소설치조례
- 4. 서울특별시 연료시험소설치조례
- 5. 서울특별시 제량기검정사업소 설치조례

(별표)		종합기술시험연구소지방공무원정원표	
직 급	정원	정 원 내 용	
1 급			
2 "			
3 "	1	보건연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 1	
4 "	5	행정직 1, 토목직 1, 수의직 1, 보건연구직 2	
5 "	20	행정직 2, 토목직 2, 기계직 1, 화공직 1, 축산 또는 수의직 2, 보건연구 11, 행정 또는 화공 1	
6 "	41	행정직 8, 토목직 2, 기계직 2, 화공직 2, 축산 또는 수의직 6, 보건연구직 20, 건축·기계 또는 전기직 1	
7 "	68	행정직 5, 토목직 3, 기계직 3, 화공직 2, 축산 또는 수의직 26, 보건연구직 29	
8 "	12	행정직 4, 기계직 6, 화공직 2	
9 "	18	행정직 3, 토목직 2, 기계직 13	
별 정 직	21	6급상당 (공해 측정장비 기술요원) 4, 7급상당 (공해 측정기사) 9, 8급상당 (공해 측정 장비관리 2, 공해 측정기사 6) 8	
기 능 직			
고 용 직	70	전공 2, 병난방공 1, 수위 7, 타자원 3, 청부 6, 대장정리원 7, 민원보조원 4, 운전원 12, 보조수 9, 사환 5, 소독수 1, 시험원 9, 전달부 1, 경비원 1, 수리공 2	
합 계	256		

규 칙

서울특별시 종합기술시험연구소
사무분장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1. 12. 1

서울특별시장 박영수 (인)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1940 호

서울특별시종합기술시험
연구소사무분장규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서울특별
시 종합기술시험연구소(이하
"연구소"라 한다)의 제의 분
장사무와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
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사무과) ①사무과에 사무계
및 영선계를 두고, 사무계장은 지
방행정주사로, 영선계장은 지방건축
기사, 지방기계기사 또는 지방전기
기사로 보한다.

②사무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
각호와 같다.

1. 사무계

- 가. 문서, 보안 및 청중단속
- 나. 인사, 복무 및 후생에 관한
사항

- 다.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조정
- 라. 재산상의 작성 및 등사관리
- 마. 교육훈련 및 낭직에 관한
사항

바. 차량관리

- 사. 청내 후정시설의 지도감독
- 이. 기타 다른 부,과 또는 직
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2. 영선계

- 가. 청사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
- 나. 영조물수리공사의 하역관리및시공감독
- 다. 영조물의 진기위장, 방탄바
금수기타 가벽설정의 시공감독
및 시공감독

제 3 조 (경리과) ①경리과의 경리계
및 자재계를 두고, 계장은 지방공
정 주사로 보한다.

②경리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
각호와 같다.

1. 경리계

- 가. 사업예산의 지출 및 결산
- 나. 세입, 세출의 현금의 유가증
권의 출납 보관
- 다. 물품구매계약
- 라. 시비자금의 관리
- 마. 과내의 다른계의 주관에 속
하지 아니하는 사항

2. 자재계

- 가. 시험용물품의 수급계획 및
출납과 유지관리
- 나. 시험용고정 자산의 관리
- 다. 검사, 시험 수수료의 조직관리

라. 검시 및 시약관리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)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규칙은 폐지한다.

- 1. 서울특별시 보건연구소 사무분장규칙
- 2. 서울특별시 축산물 위생검사소 사무분장 규칙
- 3. 서울특별시 제과기 검정사업소 사무분장 규칙
- 4. 서울특별시 광도시험소 사무분장규칙
- 5. 서울특별시 토목시험소 사무분장규칙
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1. 12. 1
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장구본석 인

◎ 교육규칙제 250 호
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규칙
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

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(이하 '수당지급 규정' 이라 한다)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방법,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수당지급신청대상자) ①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20년이상 근무한 지방공무원 (이하 '공무원' 이라 한다) 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 3 조제 1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②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이전에 퇴직한 자는 수당지급규정부칙의 정위이외에는 수당지급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.

제 3 조 (수당지급신청) 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신청서 (별지제 1 호 서식) 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(이하 '교육감' 이라 한다) 에게 제출하여야만 한다. 다만 교육구청, 중학교, 국민학교, 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당해 교육구청장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수당지급액 기간제한등)

①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

년퇴직 잔여기간제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, 정년잔여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.

②수당지급규정제 4조에 의한 대간첩 작전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체질상태로 된자에 대하여는 체질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체질등급		가산지급배수
1급내지 4급	4급	월봉급액의 4배
5급내지 8급	8급	월봉급액의 3배
9급내지 12급	12급	월봉급액의 2배
13급내지 14급	14급	월봉급액의 1배

제 5 조 (심사대상) ①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.

②수당지급 신청자가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.

제 6 조 (심사기준) ①수당지급규정제 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의 우선순위는 동 규정 동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.

②수당지급규정제 7조제 2항제 1호의 질병에 이환된 정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별표 8에 정한바에 의한다.

③수당지급규정 제 7조제 2항제 2호의 장기근속공무원의 구분은 당해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상위 구분은 일반직 공무원이

우선한다.

④교육감은 수당지급규정제 7조제 2항 및 본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체수당지급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제 7 조 (수당지급절차) ①수당은 교육감이 지급한다.

②교육감은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수당의지급일, 지급장소, 신청서류 기타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수당의지급일은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수당수령권승계) ①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.

②유족의 범위,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의 수당지급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.

제 9 조 (수당지급공고) 수당지급공고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매년 12월 1일도 한다.

제 10 조 (신청상황 및 지급결과보고)

①교육감은 수당지급신청상황 (별지 제 2 호서식) 을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3일이내에, 수당지급결과 (별지 제 3 호서식) 는 지급일로부터 7일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 (91.12.1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(별지제 1 호서식)					
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					
①소속		②제급 (등급)		③성명 한글 한자 ()	④주민등록 번호
⑤본적 (주소)					
⑥생년월일		⑦근속년수	년 개월	⑧정년일	년 월 일
⑨퇴직사유	○일반퇴직 ○상병퇴직 (폐질정도 등급)			⑩정년참여 기간	년 개월
⑪퇴직하고자 하는 날 (퇴직일)	년 월 일	⑬수당청구액			
⑬수당지급 기간	년 개월	⑭수당청구액 산출내역			
<p>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>첨부 : 1. 진단서 (상병퇴직자의 경우) 1부. 2. 기관장확인서 (대간첩작성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사태로 된자의 경우) 1부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 청 인 ⑮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 사실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소속기관의 장 직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귀하</p>					
⑮확인 연금담당자 ⑯		첨부 : 연금기록카드사본 (원본대조) 1부			
<p>위 사실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교 육 구 청 장 직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 육 감 귀하</p>					

수당지급신청서작성요령

1. ㉗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하되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.
2. ㉘는 해당사유락에 0 표하고 상병퇴직의 경우에는 퇴직등급을 기재한다.
3. ㉙은 수당지급신청계시일로부터 정년일까지 계산한다.
4. ㉚은 수당지급신청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3개월내이어야 하되 수당지급규정 제 9 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 이내이어야 한다.
5. ㉛는 ㉘의 산출결과를 기재한다.
6. ㉜은 ㉙의 퇴직하고자 하는 시기

- 로 부터 ㉝의 정년일까지 계산한다. (단, 정년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다)
7. ㉞는 신청자의 퇴직당시의 봉급표상의 원봉급액의 $1/2 \times$ 수당지급규정별표의 배수 = 수당지급액
8. ㉟는 연금담당자가 서명 날인한다.
9.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국·공립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10. 수당지급신청서를 접수하면 소속기관의 연금담당자와 인사담당자는 해당사실을 확인한 후 우측상단 적당할 여백에 서명 날인한다.

(별지 제 2 호서식)

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상황보고

1. 연령별

연령별 직급별	계	연령별				-	-	-
		60세	59세	58세	57세			
계								
(예)								
지방세기관								
지방행정사무관								

2. 근속 년수별

직 급 별	근속년수별	계	20년	21년	22년	23년	-	-	-
	계								

(별지 제 3 호서식)

지방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지급 결과보고

소속	직위	직급	성명	생년월일	수당 지급일	수당 지급액	명예 퇴직일	비고

※ 비고란은 명예퇴직으로 특별 승진된 여부를 기록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특별승진으로 퇴직된 자는 별지로 작성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1. 12. 1.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교육감 구분서

◎ 교육규칙 제 251 호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6 조 (보조기관에 위임하는 사항)

제 1항제 1호중 "4급이하"를 "6급이하"로 한다.

제 7 조 (교육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

제 1호내지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제 8호중 "5급"을 "8,9급"으로 하며, 제 9호 내지 제 14호중 "4급"을 "6,7급"으로 한다.

1. 공립의 유치원, 국민학교, 공민학교, 중학교, 고등공민학교,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의로원 (중학교 교장제의) 의 관내 전보

2. 제 1호 각급학교의 교원 (중학교 교장제의) 의 임지 지정

3. 제 1호 각급학교 교원 (중학교 교장제의) 휴직 및 복직

부 칙 (81.12.1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디 시행하되, 제 7 조제 1호 내지 제 3호는 82.1.1 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1. 12. 1.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교육감 구분서

◎ 교육규칙 제 252 호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 내지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 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기준·감경 사유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징계양정의 기준) ① 서울특별시 교육인사위원회 (이하 "인사위원회"라 한다)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,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, 근무성적, 공적, 개전의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.

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분 척결함으로써 공무 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중점 정화 대상 비위를 엄중문책하여야 한다.

제 3 조 (비위행위자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)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. 다만,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,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비위의도가 경하고 결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

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 4 조 (징계의 감경)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하며,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거나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향응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중점 정화대상으로 지정된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.

1.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
2. 정부표창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
다만,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은 장관 (장관급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장을 포함한다)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
3. 모범공무원 규정 (대통령령제 6971호)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

제 5 조 (징계의 가중)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.

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,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 6 조 내지 제 8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6 조 (의결서의 작성요령) ① 인사위원회가 제 4 조 및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제 1 항의 경우 전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

징계의결서의 의견주문란에 "불문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경:할 것을 권고한다"라 기재한다.

제 7 조 (징계의결 요구권자의 기재요령)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정규정 제 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와 그 이유를 제 2 조 및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징격양정기준 및 비위 행위자와 감경·가중에 대한 분석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징계의결요구서 확인사항)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관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중점 정화대상으로 지정된 비위 해당여부와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유무 등을 기재한 별지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(별표)를 (별표1)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(별표2), (별표3), (별지서식)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 (81.12.1)

이 규칙은 공포일 날로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 징 제 양 정 기 준				
(제 2 조 관계)				
비위의도 및 과실 비위의 유 형	비위의도가 중하고, 고의 가 있는 경 우	비위의도가 중하고, 중과 실이거나, 비 위의도가 경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비위의도가 중하고 경과 실이거나, 비 위의도가 경 하고 중과실 인 경우	비위의도가 경하고, 경 과실인 경 우
1. 성실의무위반				
가.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	파 면	해 임	징 직 - 감 봉	전 채
나. 기 타	파 면 - 해 임	정 직	감 봉	전 채
2. 복종의무위반	파 면	해 임	징 직 - 감 봉	전 채
3. 직장이탈금지위반	파 면 - 해 임	정 직	감 봉	전 채
4. 친절공정의무위반	파 면 - 해 임	정 직	감 봉	전 채
5. 비밀엄수의무위반	파 면	해 임	정 직	감 봉 - 전 채
6. 침력의무위반	파 면	해 임	정 직	감 봉 - 전 채
7. 품위유지의무위반	파 면 - 해 임	정 직	감 봉	전 채
8. 영리업무 및 겸 직금지의무위반	파 면 - 해 임	정 직	감 봉	전 채
9. 집단행위금지위반	파 면 - 해 임	정 직	감 봉	전 채

비위행위자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

(제 3 조관계)

업무와의 관련도 업구의 성질	비위 행위자 (담당자)	직상 감독자	화상 감독자	외고 감독자 (결석 전상)
○ 정책결정사항				
· 중요사항 (고도의 정책사항)	4	3	2	1
· 일반적인 사항	3	1	2	4
○ 단순·반복업무				
· 중요사항	1	2	3	4
· 경미사항	1	2	3	
○ 단독행위				

※ 1,2,3,4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.

(별표 3)

징계양정감경기준

(제 4 조관계)

제 2 조제 1 항 및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	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
과면	해임
해임	성직
정직	감봉
감봉	견책
견책	불문 (경고)

고 시

◎ 용산구청고시제 61 호

'82 용산구시법가로및광고물
계획정비지구지정고시

1. 서울특별시 광고물등관리법 시행
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
고물계획정비지구를 다음과 같이

○ 계획정비지구

지정 고시한다.

2. 계획정비 지구내의 모든 광고물
은 고시일로부터 확정될때까지 신
규제시 및 변경행위를 할 수 없
다.

3.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건설관리과
및 청과 1,2 동, 한강로 1 동 사무실
에 비치 공람한다.

1981년 11월 일

용산구청장 강 덕 기

구	간	연	장	비	고
동양제과-서부역 (교통부앞)		1.9 km.			도면참고
용산구문배동30번지-서제동224번지삼도모양면					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342 호

· 특정열사용기자제시공업지정
업체지정취소공고

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 30 조 규정

에 의거 아래 특정 열사용기자제
시공업 지정 업체에 대하여 그 지
정을 취소 하였음을 등법 시행
규칙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
한다.







1981.11.3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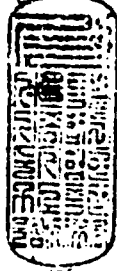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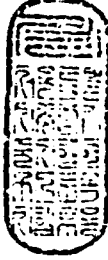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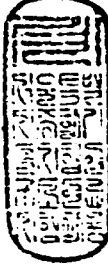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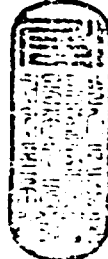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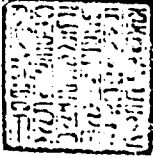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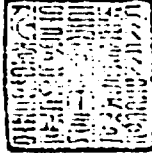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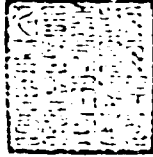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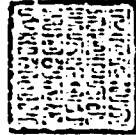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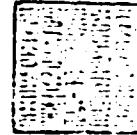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장

지정번호	상 호	대표자	소재지	사유	조치내용	관계법규
관악제 23호	주백난방공사	홍훈표	봉선동 192-2	무단 전출	지정 취소	에너지이용합리화 법 제 22 조 1 항
관악제 29호	대연설비	조석구	산 174-61	무단 다업	·	"
관악제 72호	성우설비공사	이정우	신림 706-22	·	·	"

<p>○ 서울특별시 공고제 345 호</p> <p>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</p> <p>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사용 승인하고 관인 규정 제 9 조 및 서울특별시 공인조례</p>	<p>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.</p> <p>1981.12.1</p> <p>서울특별시 장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인명 : 별첨 2. 사용개시일 : 81.12.1 3. 공인의 인영 : 별첨
---	--

공 인 의 인 영

인 영			
공인명	서울특별시 종합기 술 시험연구소장인	서울특별시 종합기 술 시험연구소장인 축산물검사부용	서울특별시 종합기 술 시험연구소장인 토목 시험부용
인 영			
공인명	서울특별시 종합기 술 시험연구소장인 연료시험과용	서울특별시 종합기술 시험연구소장인 계량 기검사과용	서울특별시 종합기술 시험연구소 계인

인 영				
공인명	서울특별시종합기술시험연구소측산물검사부용계인	서울특별시종합기술시험연구소토목시험부용계인	서울특별시종합기술시험연구소연료시험과용계인	서울특별시종합기술시험연구소저량검사과용계인
인 영				
공인명	서울특별시종합기술시험연구소징수관인	서울특별시 종합기술 시험연구소 물품관리관인	서울특별시 종합기술 시험연구소 본임경리관인	
인 영				
공인명	서울특별시 종합기술 시험연구소 난임지출원인	서울특별시 종합기술 시험연구소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인	서울특별시 종합기술 시험연구소 물품출납원인	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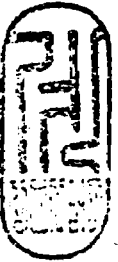

25-22







제 874 호

시

보

1981.12.1

<p>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346 호</p> <p>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</p> <p>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사용 승인하고 관인규정 제 9 조 및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.</p> <p>1981.12.1 서울특별시 장</p> <p>1. 공인명 : 별첨 2. 사용개시일 : 81.12.1 3. 공인의 인영 : 별첨</p>		인 영	
		공인명	서울특별시 장묘사업소 본임경리관인
		인 영	
		공인명	서울특별시 장묘사업소 물품관리관인
공인의 인영		인 영	
인 영	 	공인명	서울특별시 장묘사업소 본임지출원인
		인 영	
공인명	서울특별시 장묘사업 소장 직인 및 계인	공인명	서울특별시 장묘사업소 물품출납원인

인 영					
공인명	서울특별시장묘사업소장 인	서울특별시장묘사업소 분임경리관 인	서울특별시장묘사업소 물품관리관 인		
인 영					
공인명	서울특별시장묘사업소 분임지출원 인	서울특별시장묘사업소 물품출납원 인	서울특별시장묘사업소 계 인		
<p>○ 서울특별시공고제 347 호</p> <p>소방용기계기구제조업소가 위소공고</p> <p>소방법 제 37 조 제 2 항 규정에 의</p> <p>거 다음 소방용기계기구 제조업소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 처분하였음을 공고한다.</p> <p>1981. 12. 2.</p> <p>서울특별시</p>					
업체명	소재지	대표자	허가사항 번호 일자 품목	허가취소사유	허가취소 일자
(주)일영 전자	영동포구도림 동195-5	정휘탁	서울 제1-5 77. 11.23 자동화재 탐지기	소방법제 37 조 제 2 항 규정 위반	81. 12.2

○ 서울특별시 공고제 348 호

서소문구역 제7지구재개발사업
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

- 1. 건설부고시제 428 호 (78.12.29) 로 구역지정되고, 동고시 제 329 호 (81.8.27) 로 사업계획결정된 서소문구역 제7지구내 대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5 조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공람공고한다.
- 2. 관계서류는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에 비치하고 공람에 공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별도 통보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

1981. 12. 4

서울특별시 장

공 람 개 요

가. 사업명칭 : 서소문구역 제7지구 재개발사업

나. 시행위치 : 중구 서소문동 75-22 의 30 필지

다. 시행면적 : 2,691 ㎡ (814.3평)

○ 대지면적 : 2,160.3 ㎡ (653.5평)

○ 공공용지시설면적 : 513.4 ㎡ (160.6 평)

라. 건축계획 (규모 및 층별용도는 건축허가로 확정한다)

○ 건축면적 : 약 823 ㎡ (건폐율 약 38 %)

○ 연 면 적 : 약 20,600 ㎡ (용적률 약 668 %)

○ 용 도 : 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

○ 층 수 : 지상 17 층, 지하 4 층

마. 시행예정자

중구 층무로 4 가 12-1

유원건설주식회사 (대표이사 최효석)

바.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서 : 별첨 (생략)

사. 시행기간 : 인가일로부터 2 년

아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30 일간

자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(720-4627)



◎ 1981년 12월 1일자 별제 490 호

보건연구소장 박 성 배
지방보건연구원 (3급)

종합기술시험연구소장

별제 491 호

보건연구소 이 하 봉
지방보건연구원 (4급)

종합기술시험연구소 위생화학부장

보건 연구소 박 상 현 지방보건연구관(4급)	구로구수도공사과 권 대 근 지방토목기사
종합기술시험연구소 공해미생물부장	강남구 과견
축산물위생검사소장 최 원 식 지방수의관(4급)	(81.12.1-82.5.31)
종합기술시험연구소 축산물검사부장	경제 50 호
토목시험소장 서 무 전 지방토목기정	시 립 대 학 유 상 기 지방행정서기
종합기술시험연구소 토목시험부장	중앙교육연수원 전출을 명함.
경제 500 호	성 동 구 자 양 2 동 윤 경 국 지방행정서기
강남구토목과 윤 철 지방토목기사	제주도 전출을 명함.
종합기술시험연구소	서 울 특 별 시 강